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0. 22 선고 2020나71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결 2020. 9. 17.

판결 선고 2020. 10. 22.

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1. 21. 선고 2019가소15387 판결

## 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6.부터 2020. 10. 22.까지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2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 이 유

## 1. 기초사실

가. 피고와 C는 2000. 12. 30. 정읍시 D, E, F, G(이하 토지를 기재하는 경우 리와 지번만 기재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C는 1963. 3. 29. H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.

나. C는 2004. 2. 19. 사망하였다. 원고는 C의 상속인 중 1인이다.

다. 원고는 2019. 5. 3. D, E, F, G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04. 2. 19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같은 날 위 각 토지 중 1/2 지분(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)에 관하여 2019. 2. 14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로써 원고는 위 각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). 원고는 2018. 10. 12. H에 관하여 2004. 2. 19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피고는 2004. 2. 19.경부터 2019. 5. 2.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, 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년에 쌀 8가마를 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피고는 2004. 2. 19.경부터 2019. 5. 2.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년에 쌀 8가마를 받은 사실, 위 기간 동안 이 사건토지 중 D, E, F, G는 원고와 피고가 각 1/2 지분씩, H는 원고가 단독으로 각 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쌀 1가마의 가격은 130,195원 ~ 191,1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의하면,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각 1/2씩 소유하거나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·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토지의 사용이익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,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중 원고의 지분(D, E, F, G 중 1/2, H 전부)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근 10년간 연 500,000원(= 연 1,000,000원<sup>1</sup>) × 원고의 지분 1/22)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5,000,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1,000,000원<sup>3</sup>) 및 원고가 자신이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가 대신부담했음을 자인하고 있는 등기비용 등 1,000,000원을 공제한 3,000,000원(= 5,000,000원 - 1,000,000원 - 1,000,000원)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. 7. 6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0. 10. 22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 및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등기비용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돈이 원고가 스스로 공제한 위 각 1,000,000원(합계 2,000,000원)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동혁, 판사 김태현, 판사 이민영

1) 피고가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쌀 8가마의 가격(= 쌀 1가마의 가격 130,195원 내지 191,120원 × 8)보다 낮은 금액이다.

2)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(D, E, F, G 중 1/2, H 전부)보다 적은 지분이다.

3) 2015. 11. 2.자 514,000원, 2017. 12. 18.자 450,000원이 포함된 금액